

「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감사담당관 이 순 애

나. 제안이유

-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과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제6조, 제9조~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영훈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조성과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과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해당 조례는 2007년에 제정된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행정 집행의 근거 부족, 현장 수요 미반영 등 실효성을 저해할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, 향후에는 행정

수요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.

-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폭을 확대하여 협의회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, 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.
- 협의회를 통해 청렴도 결과 분석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부패 및 청렴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